

서울특별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I. 회부경위

1. 의안번호 : 제2596호
2. 제 출 자 : 이동현 의원
3. 제출일자 : 2021. 8. 11.
4. 회부일자 : 2021. 8. 18.

II. 제안이유

- 현재 서울 관내 음악 및 미술학원들은 필요 이상으로 큰 규모의 학원시설기준을 갖추도록 규제받고 있어 학원운영상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새로운 기자재의 등장, 학생 수의 급격한 감소 등 시대의 흐름에 따라 교습과정별로 변화가 필요하기에 현실에 맞게 관련 조례 기준을 재정비하려는 것임.

III. 주요내용

1. 음악학원 시설 실습실 단위시설별 기준을 현행 80 m^2 이상에서 60 m^2 이상으로 수정 (안 별표 4 제52호가목).
2. 미술학원 시설 실습실 단위시설별 기준을 현행 80 m^2 이상에서 60 m^2 이상으로 수정(안 별표 4 제53호가목).

IV. 참고사항

1. 관계법령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2. 예산조치 : 해당 없음(비용추계서 비대상사유서 별첨).
3. 기타
 - 입법예고 : 2021.8.20. ~ 8.27.(제출의견 1,808건)

V. 검토 의견(수석전문위원 김창범)

1. 제안경위 및 주요내용

- 동 개정조례안은 2021년 8월 11일 이동현 의원에 의해 의안번호 제2596호로 발의되어 2021년 8월 18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 동 개정조례안은 음악학원과 미술학원의 시설규모 기준을 완화함으로써 학원 운영의 어려움을 경감하기 위해 발의되었습니다.

2. 주요 검토의견

가. 개정 취지에 대한 의견

- 현행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이하 ‘학원법’)은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를 위해 학원의 교습과정별로 교습과 학습에 필요한 시설과 설비를 갖추어 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학원법 제8조1), 이에 따라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은 조례를 통해 교습과정별 시설면적의 기준과 설비 및 교구에 대한 기준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와 관련하여 서울시교육청의 경우 「서울특별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제5조2)에서 학원의 시설규모 기준을 교습과정별로 규정하면서 음악과 미술학원의 경우 80㎡ 이상의 실습실 시설과 일정 규모의 설비 및 교구를 갖추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학원단체인 한국학원총연합회는 동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시설·

- 1) 제8조(시설기준) 학원에는 교습과정별로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단위시설별 기준에 따라 교습과 학습에 필요한 시설과 설비를 갖추고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학원의 소방시설은 소방 관계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2) 제5조(교습과정별 시설기준) ① 법 제8조에 따른 교습과정별 학원의 시설규모는 별표 3과 같다.
② 제3조제1항제1호 단서에 따라 강의실을 따로 두지 아니할 수 있는 교습과정을 교습하는 학원은 원칙상 이론 강의가 실험·실습·실기 등에 비하여 적게 운영되는 학원을 말한다.
③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실험·실습·실기 등이 필요한 학원의 시설·설비 및 교구기준은 별표 4와 같다. 다만, 별표 4에 정하지 아니한 교습과정은 교육지원청 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이 신청자가 제출한 설비와 교구가 해당 교습과정 운영에 적합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이를 별표 4의 기준으로 본다.

설비 기준이 ① 타 시도에 비해 높게 규정되어 있어 형평성 측면에서 문제가 있고, ② 오랜 기간 동안 시설·설비 기준이 개정되지 않아 현실성이 떨어지므로 기준을 완화해 줄 것을 수차례 요청한바 있습니다.³⁾

- 동 개정조례안은 이와 같은 의견을 조례에 반영한 것으로 수강생 감소와 임대료 상승 등으로 학원 설립·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학원의 재정적 부담을 감소시키고, 타 시도와의 형평성을 확보한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표-1] 전국 시도의 교습과정별 시설면적 기준 현황

(2021.8. 기준, 단위 : m²)

과정	서울	기준 면적(m ²)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음악	80	60	60	60	60	60	55	60	60	60	50	60	45	45	60	45	45
미술	80	60	60	60	60	60	55	60	60	60	50	60	45	45	60	45	45

나. 개정사항에 대한 검토

- 동 개정조례안은 학원의 시설규모와 관련하여 음악, 국악, 실용음악(성악) 학원과 미술학원의 시설규모 기준을 현행 80m²에서 60m²로 완화하고 있습니다.
- 현재 전국 시도교육청의 학원 시설규모를 살펴보면, 서울을 제외한 나머지 시도교육청의 경우 학원 시설의 최대 규모는 60m²이고, 최소 규모 경우에는 45m²에 불과하여 그동안 학원 시설규모에 있어 형평성 문제를 제기한 한국학원총연합회의 주장은 충분히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3) 코로나19 이후 학원교육정상화를 위한 정책토론회(2021.8.9.)

- 더욱이 출산율 저하로 인한 학생 수 감소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경영 악화 및 임대료의 상승이 학원 운영에 적지 않은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 다만 이러한 학원 경영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동 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학원 시설규모의 축소로 인한 대형학원의 분원 설립이나 학원의 난립으로 인한 교습소의 경쟁력 약화 등 학원 시설규모의 축소에 대한 반대의 목소리도 적지 않은 상황입니다.

[표-2] 동 개정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 실시 결과

의견 제출 방법	입법예고	
	찬성	반대
의회 홈페이지	1,172	617
이메일	12	3
서면	3	1
소계	1,187(65.7%)	621(34.3%)

- 참고로 동 개정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 결과에 따르면 8월 20일부터 27일까지 총 1,808건의 의견이 제출되었으며 그 중 찬성이 1,187건(65.7%), 반대가 621건(34.3%)으로 조례 개정 찬성하는 의견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한국학원총연합회와 반대 측에 서있는 한국교습소총연합회에서는 동 개정조례안에 대한 반대 입장을 강력히 표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표-3] 동 개정조례안에 대한 유관단체별 입장

한국학원총연합회 ("찬성")	한국교습소총연합회 ("반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코로나19에 따른 수강생 감소와 임대료 상승 등으로 학원 설립·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학원의 재정적 부담 감소 - 타 시도와의 형평성 고려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규모 기존 학원의 프랜차이즈 식 분원 설립 등 소규모 학원의 난립 - 사교육시장의 무질서 및 교육의 질 저하

또한 입법예고 결과에 대한 해석에 있어서는 동일인의 중복 의견 제출이 가능한 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시스템의 한계에 대한 고려도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따라서 동 개정조례안과 관련해서는 각계에서 제기되고 있는 학원 시설규모의 축소에 대한 상반된 의견에 대해 폭넓은 의견수렴과 함께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참고로 서울시교육청은 동 개정조례안과 관련해서 별도의 의견이 없음을 밝힌 바 있습니다(행정관리담당관-12601, 2021.8.19.).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관계 법령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 2021. 3. 23.] [법률 제17954호, 2021. 3. 23., 타법개정]

제8조(시설기준) 학원에는 교습과정별로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단위시설별 기준에 따라 교습과 학습에 필요한 시설과 설비를 갖추고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학원의 소방시설은 소방 관계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